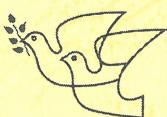


한반도정세대응 여성task force - 1차 전문가포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

# 핵위기 해소와 한반도 평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일시 : 2003년 7월 3일(목) 오후 3시~6시
- 장소 : 홀리데이인서울 호텔 백합홀
- 후원 : 여성부





한반도정세대응 여성task force - 1차 전문가포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

# 핵위기 해소와 한반도 평화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일시 : 2003년 7월 3일(목) 오후 3시~6시
- 장소 : 흘리데이인서울 호텔 백합홀
- 후원 : 여성부



## 순서

- 사회 : 윤덕희(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평화여성회 통일과제팀장)
- 발제 : 핵위기 해소와 한반도 평화  
..... 박명림(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 토론 : 한반도평화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이대훈
- 토론 : 핵위기 해소를 위한 여성의 역할  
..... 김민전(경희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전체토론



\*\*\* 본 발표문은 2003년 6월 10일 한국통일포럼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정 초고본입니다. 따라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글로써 필자의 동의없이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본 논문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논점은 발표를 통하여 저기,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평화구상 초안; 평화의 과학, 평화의 전략

박 명 팀(연세대학교)

'1953년 체제', 또는 '7.27체제'를 넘어; '2003년 또는 2004년 체제'에의 모색

오늘의 한국은 전쟁과 평화의 침애한 기로에 놓여있다. 위기의 정점에 선 오늘 누구도 이 위기가 어떻게 해소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이 엄중한 위기가 전쟁으로 치달을지, 아니면 지혜롭게 해소될지 아직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 점은 분명히 알고 있다. 이 위기를 평화로 안착시키려는 혼신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위기의 크기는 폭발 이후의 피해의 크기 및 극복 이후의 평화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곧 기회의 크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1876년 개항으로 한국문제가 지역문제-국제문제로 전화된 이후, 세계적 전쟁의 참화에 놓였던 1950-53년을 제외하고, 오늘처럼 한국문제가 '한반도'·'동아시아'·'세계'의 평화 및 전쟁의 두 길을 가를 전향으로 작용한 적은 없었다.

'제국주의시대'·'냉전시대'를 거쳐 '탈냉전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문제가 동아시아와 국제 정치의 핵심의제라는 점은 지정학적, 지정학적 차원에서 열강의 쟁패의 초점이라는, 한국이 아닌 독특한 세계전략적 위상이 아니고는 설명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인 1953년의 정전협정체제를 포함해, 1994년 체결된 북미기본합의, 그리고 1998년 이후 급증한 남북교류는 2002년 10월 4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촉즉발로 치닫는 북핵·전쟁 위기로 인해 전면적인 재조정, 중단, 과국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동안 한반도의 국제적 국내적 안정과 안전을 담보해왔던 두 개의 기본 틀, 즉 (19) "53년 체계"와 (19) "94년 체계"는 이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평화를 위해 제3의 체제로 폐기, 재편,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과연 "2003년 또는 2004년 체제"일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전설되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하는가? 우리는 과연 우리의 지혜와 전략을 통해 이 위기를 발전과 평화의 계기로 전환시킬 것인가, 아니면 한번 더 전율할 전쟁과 죽음의 참화로 우리자신을 몰아넣을 것인가? 오늘의 전쟁체제는 1950-53년의 전쟁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성찰해야 할 점은 50년 전 현대 세계사상 가장 참혹하고도 비극적인 전쟁을 치르고도 평화의 조건을 창출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무지와 몽매에 대한 냉정한 반성이어야 할 것이다. 그토록 비극적인 전란을 겪고도 50년 후 다시 전쟁의 위기를 맞아야하는 현실은 매우 고통스럽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고작, 시시각각 다가오는 예견된 위기를 바라보는 정도밖에 안 되었나 묻게된다. 이 말은, 오래 예견된 2003년 위기(설)에 대한 우리의 지적 현실적 무력감을 말하려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필자가 작업중인 북핵 위기 해소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작업의 일부분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의 소모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첫째로 현금의 대북 압박·봉쇄 프로세스를 채택하기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대북 협상·유인 프로세스를

먼저 가동해야한다는 점이다. 두 프로세스 중 후자를 먼저 북에게 제시, 협상에 착수한 뒤 그 논의결과를 갖고 미국-중국과의 전자 프로세스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는 점이다. 이른바 이중집근(two track approach) 인 것이다. 유인없는 봉쇄는 성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 노무현 정부의 접근은 원칙, 방향, 과정, 방법, 순서에서 모두 오류이거나 적어도 뒤죽박죽으로 보이며, 하루 빨리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과의 정상회담 역시 위상턴 회담의 재판이 될 것은 보지 않아도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위기감을 주고 있다. 문제는 비전이며, 정책의 목표는 더욱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번째 원칙은 북핵위기 극복과 평화체제 건설의 두 방법, 철학, 과정, 수단, 목표는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원칙은 경제 및 교류 협력을 넘어 평화건설과 군사의 민족공조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발표자로서는 이번 발표를 통해 많은 지적을 통해 후자의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는 마음 크다.

### 북핵문제 – 국제문제이자 한국문제

### 북미문제이자 남북문제

역사에서 평화처럼 우리가 절실히 소망했으되 전쟁처럼 우리를 칠저하게 고통한 것도 없었다. 비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가 허구라는 점은, 그 수단 자체가 갖는 반평화성, 반생명성 때문이다. 핵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핵은 결코 생명과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는 너무도 명백하다.

가장 먼저는 북한의 강도높은 통일구호 및 정책과는 달리 핵은 남과 북을

준(準) 영구분단과 대결상태로 풀어놓는다는 점이다. 핵을 가진 일방과 핵을 갖지 않은 일방의 남북관계는 비대칭적이며 불균형적이며 불평등할 것이 분명하다. 핵은 민족의 통일에 반한다. 둘째는 핵은 전민족을 상시 핵전쟁 위협상태에 놓이게 한다. 남과 북은 영원히 핵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핵화는 곧 핵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핵은 (동아시아와 민족의) 평화에 반한다.

셋째 북한은 미국의 MD 정책 및 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시켜준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핵화(核化)의지 및 추진으로 인해 MD에 대한 세계의 반대를 돌파하며 군사폐권전략 구상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북한의 핵화는 연쇄적으로 일본과 대만의 핵화 유혹을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 및 통일문제에 대해 핵이 없는 남한의 이니셔티브를 현저히 악화시킨다. 반미·반일을 국가의 절대가치로 내세우는 북한의 핵보유는 정반대로 미일의 국가이익 및 군사전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핵은 민족의 이익에 반한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확고하게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핵화는 자신들의 고립과 단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세계와 단절된 북한은 현재 “핵을 통해”, “핵을 고리로” 세계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북한은 핵을 통해 체제유지를 위한 군사적인 전략적 우위지점 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핵을 보유한 북한에게 국제사회와 남한이 인도적 지원과 식량지원을 포함해 경제원조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북의 세계로부터의 고립과 절연은 결정적으로 심화되고 인민의 고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핵은 북한인민의 이익에 반한다.

다섯째 북한의 국내외적 공인은 남한의 경제에 대한 큰 타격으로 연결된다. 국제신용도 하락, 기업활동 위축, 금융시장 혼란, 외국자본철수로 남한 경제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북한이 오래 강조하였듯 남과 북 어느 일방의

경제발전은 민족통일의 물질적 담보가 된다. 남의 경제침체는 그러한 점에서 곧 북의 경제에 대한 직접적 타격이 된다. 자기를 위한 선택이 다시 자기를 침식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점이다. 핵은 남한의, 그럼으로써 북한의 경제에도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핵은 남과 북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상의 이유에서 북핵의 저지는, 미국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우리 자신, 곧 남한의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2003년 들어 남한·북한·미국·중국 사이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두 번의 중요한 계기가 존재했다. 베이징에서 개최된 3자회담(4월 23~25일)과 한미정상회담(5월 15일)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2002년 10월 북한의 핵 보유 시인 이후 최초의 북미 공식대화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의 최초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2003년 10월 4일 위기의 도래이래 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한번도 직접 상호 간에 적극적 해소제기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더욱 멀어지고 있다. 북한·미국·중국 3자회담에도 불구하고 합의되고 해소된 쟁점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북미대화를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성이 전무하다는 점이 거듭 확인되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94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북미양자 회담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이며, 북한이 제시한 “새롭고도 대담한 제안”은 그동안의 요구를 망라한 일련의 항목들로 알려지고 있으나 미국과 남한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수용불가로 일관하고 있다. 북의 대담한 제안 역시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뒤에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미양국은 거부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북한은 베이징 3자회담을 전후로 지금까지 “8천 여대의 폐 연료봉 재처리 마지막 단계”(4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핵 보유”(4월 23일 베이징 회담 도중

이 근 수석대표·외무성 미주 담당부국장),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무효화 가능성 시사”(5월 12일 조선중앙통신),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폐연료봉 재처리를 기본적으로 끝냈고, 앞으로 핵무기를 더 많이 갖게 되어 있다”(백남순 외상, 김계관 외무부상, 5월 31일).... 등 일련의 초강경 발언 및 조치를 잇따라 공개, 대미, 대남, 대국제사회 압력을 최대한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한미일의 조치는 ‘전쟁준비’, ‘전쟁음모’, ‘전쟁흉계’라며 더욱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그들은 급기야 전민족적인 대미성전을 강조하고, 핵 억지력 - 군사적 억지력 보유 - 대등한 대미 군사적 균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한국·미국·일본의 반응 역시 3국공조, 대북압박, 군사협력의 강경방향으로 흘르고 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원론적 강조와 함께 “추가적 조치”(further steps)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군사적 옵션의 선택지를 더욱 넓혀 놓은 바 있다. 미일정상회담(5월 23일) 역시 “폐연료봉 재처리 등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경우 더 강경한 조치”(tougher measures)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미 한국 정부는 ‘추가적 조치’와 ‘더 강경한 조치’ 사이의 공통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미일간에는 사실상 북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군사압박에 대한 3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대부 군사옵션에 대한 한미일의 원칙적 견해일치는 향후 북한의 강경대응과 함께 맞물릴 경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을 더욱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정상회담 이후 미국에서는 추가적 조치에 군사행동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한반도에는 첨단 무기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참여정부는 국방비 증액, 첨단무기 도입, 자주국방을 통한 대북억지력·대미자율성의 확보를 뚜렷한 안보·국방노선으로 확정, 추진하고 있다. 바야흐로 국면은 군사에는 군사로, 위협에는 위협으로, 무기에는 무기로 대응하는 단계로 전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위기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3자회담에 이어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구체적 대안, 로드 맵, 단계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은 점점 더 격렬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한에 대해서도 과거 민족공조를 강조해오던 입장에서, 특히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최근엔 강경한 비난과 반대를 반복하고 있다. 이라크전 파병결정과 특검을 통한 대북송금조사, 핵-경협 연계 방침 등 남한의 선택을 북한은 강력한 대북압박으로 인식하고 있고, 한미 정상간에 “추가적 조치”에 대한 합의 이후 북한은 반복적인 대남 “재난발언” 및 추가적 조치 합의에 대한 비난, 제재 및 군사적 조치의 경우 핵전쟁 참화 가능성 시사로 맞대응하고 있다. 최근의 일련의 국제회의 및 정상회담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제문제의 하나로 북핵문제가 논의되었으나 해결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단초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까지처럼 남한의 적극적 이니셔티브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북핵문제는 곧 한반도문제이며 따라서 한국문제인 것이다.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는, 분계선의 대립장벽의 완화와 함께 북한과 남한의 선택은 즉각적으로 상대에 서로 큰 영향을 끼치는 관계로 변전되었다. 그중 최대의 문제는 북핵문제이다. 그것은 국제문제를 넘어 우리문제이며, 북미문제를 넘어 남북문제이다. 특히 북미문제라기보다는 남북문제이다. 미국은 북핵인정부터 평화적 해결, 현상유지, 제한적 봉쇄, 전면봉쇄, 국부공격, 전면공격까지 사실상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이다. 군사적 수단을 통한 핵화차단은 물론 북핵인정 역시 남한의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정상 회담 직전 미국언론과 조아에서 왜 북핵인정 발언과 보도가 집중 누출되었는지를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2002년 10월 이후 북핵위기에 대한 남한의 독자적 해결철학과 전략과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가? 모든 사회현상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인식관점을 확립하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그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설정하는 것이 문제해법을 찾는 첫 출발인 것이다. 북핵문제의 제일(第一) 차원은 남북 수준이며, 제이(第二) 차원은 북미-한미 수준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주체,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해법과 직결되어있다. 우리는 그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이며,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풀어갈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의 제3차도, 방관자도 아닌 주체인 것이다.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양극화와 대립이 아니라 우리문제인 북핵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남한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평화를 위한 대결단이 화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 탈냉전, 남북관계, 그리고 두 개의 “3자 - 3변 매트릭스”; 남한-북한-미국, 남한-북한-중국, 그리고 남-북-미-중 4자 6변 관계

한반도 평화·통일문제의 핵심을 담고있는, 오늘도 지속되는 1953년의 휴전체제=전후체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세계사상 미국이 처음으로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정책을 포기함으로써 타결되고 등장한 1953년 정전체제의 본질은 이곳의 냉전질서를 정초하는 역사적 잠정타협(modus vivendi), 즉 세계냉전의 한국화로서 국제-지역-국내 수준에서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3층 수준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냉전시대 내내 이러한 3층 수준의 대결구도는 혼들리지 않았다. 한국문제를 두고는 오늘날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4자인 남북-미-중 사이에 두 개의 “3자 양변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한중 및 북미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소련의 해체를 계기로 탈냉전과 함께 한반도에는 두 개의 기묘한 “3자 3변 관계” 조합이 대두하였다. 냉전시대 내내 적대적이었던 남한과 중국의 접근과 1992년 관계정상화, 북한과 미국의 접촉과 1994년 기본합의체결이 그것이었다. 따라서 “3자 3변관계” 매트릭스의 하나는 중국을 고리로 한 남한-북한-중국의 조합(matrix)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을 고리로 한 남한-북한-미국의 조합이었다.

물론 이 두 조합의 결합은 4자 6변 관계로 변전되어 오늘의 한국문제의 국제적 핵심틀간을 형성하고 있다.(그림1 참조) 냉전시대 각각 앞의 매트릭스는 한중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3자양변관계였다면, 후자는 북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3자양변관계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중, 북미관계는 각각 다른 차원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중국과 한국은 냉전시대 내내 적대관계였다. 한국전쟁 시의 격렬한 전쟁, 그리고 전후의 남북‘적대’와 북중‘동맹’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중국의 실용주의 외교노선과 남한의 북방정책이 만나면서 북한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중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양자3변관계는 3자3변관계로 변전되었다. 이후 중국은 대북“안보협력” – 전통적 순망치한 관념, 중조(中朝) 협체당·협체국 의식, 대미견제 완충역할 – 과 대남“경제협력”을 충돌없이 병행해오고 있다. 한국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남북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 평화통일”, “한반도비핵화”를 3대정책기조로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평화협정방식으로는 “남북 평화협정 체결” 및 “미중(美中)의 보장”이라는 이중점근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입장에 근접하는 것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한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의 연장에서 남과 북 모두의 핵을 반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다. 동시에 북핵을 명분으로 한 한미일 군사협력 및 미일의 MD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관계처럼 여기에서도 “3자 3변관계”로 변전되면서 북중간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탈냉전 이후의 한미관계가 협력과 긴장관계로 진입한 것처럼 북중관계 역시 협력과 긴장이 공존한다. 남한과 중국 사이에는 1992년 수교이후 연 평균 20%씩 성장하여 2002년 현재 교역액이 440억불에 도달, 서로 3위의 교역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양국의 시장의 통합 정도는 엄청난 것으로서 거의 한미관계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 협력은 이제 군사충돌과 대결을 저지하는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오늘날 경제적 부담은 물론, 지속적인 핵화위협으로 인한 미일 MD정당화 명문제공으로 인해 군사안보측면에서도 중국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북중관계는 일면 협력과 일면 긴장을 동시에 노정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확고한 반핵정책이 갖는 압력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인 것이다.

후자를 살펴보면, 한중·북중 관계처럼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라는 두 '양자 관계'(dyadic relations)조합인 남북'적대'와 한미'동맹'은 냉전시대 한반도 문제를 규정한 역사적 쟁쟁이였다. 적대와 동맹의 양면 공존, 그러나 탈냉전 이후 남북'적대'를 완화하려하자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남북'적대'의 완화가 한미'동맹'에 전이되는 과열은, "분리된 두 대쌍관계 조합"이 "연결된 한 개의 3자-3변 관계"로 전환되며 나타난 탈냉전 시대의 특징이었다. 이것 역시 다음과 같은 3번관계의 3단계를 이해함으로써 파악가능할 것이다.(그림 2 참조)

1단계; 과거. 냉전시대의 관계 : 적대 - 동맹 - 적대 관계

2단계; 현재. 탈냉전 시절의 재편기. : 화해/대결의 공존 - 균열 - 적대 관계

3단계; 미래의 바람직한 대안. : 화해 - 대등 - 정상화 관계

2단계 한반도문제에서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1998-2000년의 황금의 시기는 다시 오기 어렵다는 점이다. 남북·한미, 두 관계동학이 남북·한미·북미 3자 3번 관계동학으로 변전되며 이것은 더욱 그러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한반도 문제에서 남한과 미국 양측 모두가 대북 온건정책("포용-포용 조합")을 꾸던 시기는 결코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었다. 분단 50년 동안 오직 이 때에만 남북·북미관계에서 "포용-포용 조합"이 형성되었다. [그림3]에서 보듯이 김영삼-

클린턴, 김대중-부시, 노무현-부시 어느 조합보다도 김대중-클린턴 조합은 북한으로서는 유리한 조합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정적 기회에 남북, 북미, 북미 관계를 균원적으로 전환시켜 평화와 통일의 장치를 놓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포용-포용 조합에서 특별히 미사일문제로 인한 북미대화의 결렬로 인한 북한의 실기는 앞으로 두고두고 북한의 전도를 어렵게 할 것이다.

2단계의 남한에서 주목할 현상 두 가지는 시민사회와 대북지원을 한편으로 하고, 반전-반미시위와 반핵-반북시위의 공존을 다른 한편으로 한다는 점이다. 대북지원과 반북, 반전과 반핵, 상극적인 이 둘이 왜 남한에서 공존·충돌하고 있는가? 이 전치된 연결고리는 온전히 한국현대사의 반영이다.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뛰어넘어 나아가야 한다. 남에서 반전과 반핵의 충돌은 북미관계와 한미관계를 내장하는 남북관계의 모든 것을 함축하는 조합이다. 우리는 해방 직후 두 이념, 두 조직, 두 시위, 두 집회, 두 소리가 충돌했던, 그리하여 분단으로 치달았던 미국을 갖고 있다.

전후체계의 본질의 연장으로 오늘의 한반도 위기에서 유일세계 제국 미국의 위치와 정책은 특별하다. 탈냉전 시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미관계정상화를 포함한 포용으로 출발했다. 포용정책이 성공할 경우 북한에 의해 국제사회의 규칙과 윤리는 좀더 잘 준수되고, 좀더 평화지향적이 되었을 것이다. 적어도 오늘날 일방주의(unilateralism)와 군사제일주의(military-first policy)로 나타나는 미국과 북한의 두 예외주의(exceptionalism)의 산물인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실기와 곧이은 부시정부 출범 이후, 특히 9.1 이후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의 일방주의를 접고 북과의 진지한 대화에 나서 관계를 정상화한다.

바랄직한 3자 관계는 궁극적으로 3 단계이다. 고전적 평화이론이 말하듯 공화제가 평화의 전제라는 국내적 평화조건에 더해, 국제적 수준에서는 국가간 관계의 민주화 역시 평화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점에서 남과 북은 평화의

내적 조건을 함께 깊이 성찰하고, 또 수직적 후원·수혜(남한) 및 상호 적대(북한)로 점철돼온 과거의 한반도·미국 관계를 한미관계의 “대등화”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라는 평등한 파트너십으로 전환시키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공고한 평화·협력’, 한미관계의 ‘대등한 파트너십’, 경제제재 해제를 포함한 북미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 이 셋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요하다. 북미관계정상화와 남북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가 보장될 때 남은 대폭적인 대북협력에 나서야한다.

요컨대 우리는 ‘평화의 조건’ 두 가지를 생각해야한다. 필자는 그것을 “이중 민주화(double-sided democratization) 프로젝트”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 이중 민주화 프로젝트는 평화의 국내적 조건에 대한 최근의 민주평화이론과에 필자가, 갈퉁(Johan Galtung)이 제시하는 평화의 국제적 조건, 즉 국가간 관계의 민주화를 덧붙여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이른바 민주화 이론에서 말하는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이중 민주화프로젝트2)와는 거리가 멀다. 갈퉁은 내적 평화(intra-peace)가 곧 국가간 평화(inter-peace)로 전이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sup>3)</sup> 민주국가 미국 일극체제가 오늘날 전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은 민주평화이론, 나아가 해계모니 평화이론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국내적 조건은 공화주의, 즉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평화의 최고의

1)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들을 수 있을 것이다. Michael W. Doyle,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4(Dec. 1986), pp. 1151-1168; -----, *Ways of War and Peace* (New York: WWNorton and Company, 1997); Bruce Russett, *Govern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iples for a Post-Cold War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민주주의와 통일사이안보', 김재한 외, 「한국정치외교의 이념과 논제」, 1995, pp. 125-140; Michael Brown, Sean Lynn-Jones and Steven Miller eds., *Debating the Democratic Peace* (Cambridge: The MIT press, 1990); Miles Kahler ed., *Liberalization and Foreign Poli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90); George Sorensen,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김만출 역, 「민주주의와 민주화」, 『풀빛』, 1994, pp. 165-233. 이에 대한 국내의 문헌들로는 최상윤, 「평화의 정치사상」, 『나무출판』, 1997; 원인복, 「민주평화, 전쟁, 유럽한국의 미래」, 이호재·원인복 외, 「유럽통합과 신유럽안보질서」, 『민음사』, 1998 ; 김석우, 「민주주의 평화와 양보협상」, 「국제정치논총」 제37집 1호(1997), pp. 83-107를 참조.

2) David Held, *Models of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1987), pp. 283-289

3)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Oslo: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96), pp. 4-5.

비용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통제하는 체제에서 시민사회가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평화를 과파할 수는 없다. 민주화 이후 남한에서 보여지는 대북 온건정책 및 지원노력, 전쟁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역할은 민주주의와 평화지향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남한이 민주화를 성취한 오늘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한 국내적 민주화 프로젝트는 곧 북한의 민주화를 의미한다. 전인민을 기아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민족을 핵화(核化)의 위협으로 몰아가며 (대내적) 생명과 (대외적) 평화를 외면하는 북한의 군사제일주의는 극단적인 비민주성의 산물로서 그 반대가 곧 생명과 평화를 위한 선택이 된다. 따라서 북한은 반생명·반평화의 이데올로기와 평화정책·반전논리를 동일시하는 오류에서 빠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평화의 국제적 조건은 국가 간 관계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전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냉전이 해체된지 10년 이상이 흘렀으나 한반도에서 국가 간 관계는 전혀 민주화되지 않았고, 이 점은 오늘날 한반도 위기의 한 요인을 이룬다. 즉 한미관계와 북미관계는 탈냉전시대에도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 요컨대 북미'적대'관계와 한미'위계'구조는 한반도평화를 위해 민주화되어야 한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남북'적대'와 한미'동맹'이라는 두 관계만 있었을 뿐 북미관계는 존재조차하지 않았다. 남북'적대'와 한미'동맹'이 자동적으로 북미'적대'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탈냉전시대에는 남북'적대'가 부분적인 남북'화해'로 변하면서 한미'동맹'이 한미'균열'로 변전되었다. 남북'적대'는 남북'화해'로, 한미'동맹'은 한미'균열'로 변화하고 있지만, 북미'적대'는 냉전시대와 동일하게 요지부동이다. 이 세 가지 관계를 동시에 바꾸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하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정경분리가 "영역의 분리"가 아니라 "주체의 분리"일 경우 초래될 민족문제의 기형화에 대해 강조해온 바 있다. 정치와 경제의 "영역의 분리"란, 남과 북의 국가와 시민사회, 당국과 민간의 분리를 통해 각각의

영역에서 전자는 정치군사를, 후자는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양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다할 때 평화와 협력은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의 분리”란, 북한의 방식처럼 정치군사와 교류협력의 주체를 각각 미국과 남한으로 분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오늘날 남한의 소외, 배제는 두 정경분리가 만난 결과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는 정치군사와 경제협력 모두에서 민족공조와 공영이 진행되길 추구해야 할 것이다.

민족 내부에서 정치군사적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달성되기 어렵다. 3자-3면 관계동학의 본질과 역사적 전개를 고려할 때 현금의 ‘북미’ 전쟁위기와 ‘남북’ 교류협력의 엇물린 공존은 ‘우리민족끼리’의 평화공조를 통해 풀어갈 수 있다. 우리는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전략적 결합과 활용이 필요하다. 이 때 말하는 국제공조는 민족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 국제조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미를 말한다.

민족공조는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평화문제를 위해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민족의 평화문제를 국제문제로만 접근한다면 민족공조의 영역은 너무 좁고 적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문제야말로 민족이 합심해서 풀어야 핵심 사활적 문제이다. 이 문제에서 남북협력이 이루어질 때 남측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여할 영역과 역할은 크다. 반면 남측이 배제될 때 민족공조는 부분적이며 대단히 허약하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공조는 경제에서의 민족공조 뿐이다. 그러나 청자 민족의 공생을 추구해야 할 군사·평화문제에서는 그들은 오직 북미관계를 통해서만 문제를 풀어갈려고 한다. 남북·한미·북미, 셋 중 가장 적대적인 북미양자관계를 먼저 해결하려고 해서는 이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체제의 붕괴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북미관계조차 북한은 크게 실기를 한 적이 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오직 김대중-클린턴 조합의 시기동안에만 북한은 남한과 미국의 포용·포용의 대북정책 조합, 즉 온건

-운전 대북정책 조합을 만날 수 있었다. 과거 남한과 미국은 강경파 포용을 동시에 폐거나 엇갈린 정책조합을 형성해왔다. 2000년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과 조명록~올브라이트(Madeline Albright, 당시 미국무장관), 김정일~올브라이트 회담은 양자의 포용정책 조합이 빚어낸 대북문제해결의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북미는 김정일~올브라이트 회담에서 작은 문제로 회담을 결렬시키고 말았다. 북한으로서는 이는 큰 손실이었다. 당시 회담에서 북한이 대폭적인 — 사실은 당시 시점에서는 그리 대폭적이지도 않았다 — 양보를 통하여 평양과 위성단에 성조기와 인공기를 계양하는 관계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면 오늘의 위기는 불필요한 여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2000년은 한반도 평화도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한 해로 기록될 것임에 틀림없다.

결국 북미관계, 북미평화협정이 아니라, 남북관계, 남북평화협정이 바로 해결의 단초요, 요체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1>에서 보듯이 현재의 “4자6면 관계”에서 사이가 가장 나쁜 북한과 미국이 이 문제를 끈다는 것은 전연 불가능하다. 남북관계, 남북평화협정 체제를 국제체제, 특히 미중이 보장해 주는 문제, 이른바 2+2 방식의 실현은 당연한 다음 전제가 된다. “이중민주화”와 “이중 보장”的 동시 프로젝트인 것이다. 남북평화협정을 통해 남북관계는 ‘평화체제’로 나아가며, 동시에 한미관계는 작전지휘권 이양을 통해 ‘대동화’로, 북미관계는 국교수립을 통해 ‘정상화’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평화협정을 통해 북핵완전포기와 대북경제협력의 대교환, 이른바 한국판 마샬플랜, 즉 ‘노무현플랜’을 우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액수는 일년에 약 30억~50억 달러 정도면 적절할 것이다. 이 정도규모는, 독일 사례에 비해 결코 크지 않음은 물론 북핵보유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비한다면 한반도 평화구축 비용으로는 아주 작은 것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플랜, 또는 한국판 마샬플랜은, 매우 적은 액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주기’ 논란을 빚었던 DJ 헛별정책을 유념하여 국민적 동의와 투명성의 확보하에 대북 지원방식의 투자 및 경제협력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핵위기의 완전한 해소와 평화협정체결, 북미국교정상화가 진행된다면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역시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휴전협정을 대체한 남북평화협정이 맺어질 경우 비로소 북미관계는 '정치적' 수준에서의 국교정상화, '군사적' 수준에서의 체제보장,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제봉쇄해제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 남북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남한은, 북한이 갖고 있는 불신, 즉 남한은 미국의 군사종속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군사·평화문제는 미국과만 해결하겠다는 불신을 한미관계의 '대등화'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 즉 현시점에서는 '남북' 평화협정, '한미' 대등화, '북미' 정상화, 3번관계의 동시 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경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역시 더 이상 '한미' 위계·관계와 '북미' 적대·관계의 지속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대한반도 전략을 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핵포기의 대가로 체제보장과 미일국교정상화, 막대한 경제지원을 얻고, 미국은 위신과 명분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체의 경제적 부담없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며 본토안보·테러집단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남한으로서는 핵위기 해소와 경제침체방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의 참여, 북핵저지, 대남한 경제관계 지속, 미일 MD저지명분의 확보라는 공통 및 개별적 이익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그동안 윤위되던 북미 원-원 게임을 훌쩍 뛰어 넘어 남한·북한·미국 3자의 원-원-원 게임, 나아가 한반도-동아시아-세계의 원-원-원 게임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 도표2: 북한의 핵화 고수와 포기의 득실 비교 : 예상가능한 남한의 대북협상모듈 매트릭스 --- 평양회의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참조

지난 3월 평양에서 위와 같은 북핵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비공개 접촉을 통한 순차적 타결 이후 일괄 합의 및 발표"라는 해법을 제안했을 때 북한 관료들과 학자들이 보인 반응에 비추어 이후 필자는 약간의 확신을 갖고

이 해법을 세련화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북한은 늘 그렇듯 사실과 논리에 허약하다. 그들의 원칙적 반응은 “남한으로서는 충분히 제안 가능한 방법이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거처럼 군사-평화문제는 오직 북미 간의 문제라는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남북평화협정을 주장했던 자신들의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자료들이 영향을 주었음에 틀림없었다. 하나는 남한이 미국의 (북한 체제) 담보를 받아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당신들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확실하게 포기할 경우 국교정상화는 이미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 포함되어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sup>4)</sup> 이번에는 남한이 당신들을 위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도 침언해주었다. 다른 한 가지는 역시 남한의 대미종속성, 특히 군사적 자율성의 부재에 대한 강의 회의였다. 작전지휘권도 없는 국가와 평화협정을 맺어 어떻게 평화와 체제를 담보받을 수 있느냐는 소리였다. 서로 다른 소속과 직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뚝 같은 문제제기를 받고 필자는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이 문제가 북한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핵심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 한반도 평화(협정)의 주체 문제: 자주와 평화의 결합

#### — ‘한미’ 작전지휘권 환수 - ‘남북’ 평화협정 - ‘북미’ 국교정상화의 조합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반도문제, 특히 평화-군사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도 왜 남한과 북한이어야 하는지 해답해야한다. 그동안 가장 논쟁이 되어온 평화

4)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 2장,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2장2절,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기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방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2장 3절,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질 때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까지 격상시켜 나간다.”

협정의 주체가 왜 남과 북이 되어야하는지 그 역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논리적 문제를 넘어 이념적 논란으로 자속되어왔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은 민족주의논리들은 민족주체성을 강조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미국의 책임을 들어 근거없이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던 것이다.

첫째 1953년의 휴전협정의 당사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서명 주체였던 클라크(Mark W. Clark) 사령관은 분명히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서명한 것이지 미군 사령관으로서 서명한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당시 유엔군의 대부분은 남의 국군이었다. 즉 서명의 주체는 집단군의 대표였지 특정 국가의 대표는 아니었다. 따라서 미국, 미군이 서명의 주체였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휴전협정 때문에 미국이 평화협정의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은 틀린 것으로서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유엔회원국인 북한이 결국 유엔과 평화협정을 맺게되는 셈이다.

둘째 휴전협정 이후의 최초 한반도 문제 회담이었던 1954년 제네바 평화회담의 문제이다. 이 회담은 한반도에서 휴전체제를 다를 최초의 회담이었기 때문에 남과 북의 첫 입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회담이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1954년 시작된 제네바 평화회담에 남한은 당사자로 참여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참석을 꺼린 것은 남측 자신이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최근 공개된 동구의 비밀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당시에 남한이 당사자로 포함된 이 회의에서 소련보다도 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더 높게 보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북측의 당시 남일 외상은, 평화회담에서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주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sup>5)</sup> 오늘날 남측은 평화협정의 당사자에서 제외하려고 하

5) 'Proposal by Mr. Nam Il,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une, 15,1954., The Korean Problem at the Geneva Conference, April 26-June 15,1954 (The Department of State, 1954), p.175

는 모든 주장들은 자신의 최초 전후 평화(협정)정책과 인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셋째 북과 중국의 조중/중조연합사령부(朝中/中朝聯合司令部, 聯司)의 설치 문제이다. 만약에 남측의 전시 작전지휘권 이양 문제를 제기하려한다면 이 문제는 북측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북측 역시 1950년 12월 14일 중조연합사령부의 설치를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전부 중국측에게 넘겨준바 있었다. 북측은 다만 연사에 부사령관 김웅과 부정치위원 박일우를 파견하였을 뿐이다.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당시 북의 김일성 수상은 군정권과 군령권의 모든 권한을 펑더화이(彭德懷)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연사 사령관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따라서 북측이 남측이 1950년 7월 15일에 작전지휘권을 미국에 이양한 것을 들어 자격의 상실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된다.

넷째 가장 중요한, 그리고 확실한 평화문제의 민족공조의 근거는 바로 김일성 자신의 반복적인 언명이다. 북측은 오랫동안 남측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1953년 종전 이후 1972년까지 북의 김일성 주석은 반복하여 남북/북남 평화협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1974년 이후부터 북은 갑자기 북미평화 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 이후 남북평화협정 얘기는 사라졌다. 김일성, 두 정책 중 변화하기 이전의 앞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았음은 물론이다. 오늘날 북측의 정책은 자신들의 최초 공식 정책 및 김일성의 초기 교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몇 가지만 원문그대로를 인용해보자.

남북조선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고 군대를 줄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남조선인민들의 무거운 군사비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며 남북 사이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긴장상태를 없애고 호상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

다.

남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를 물리か게 하고 남북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무력을 줄이는 것은 조국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중요한 첫걸음으로 될 것입니다. 남북 사이에 긴장상태가 없어지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 문화의 교류와 협조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도탄에 빠진 인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은 절박한 문제입니다. 남북 사이의 경제, 문화적 런계를 실현하고 교류와 협조를 도모하는 것 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sup>6)</sup>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서는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남북 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때 대하여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기회에 남북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대하여 제의하였으나 남조선 당국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sup>7)</sup>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조선측에 사회주의제도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이 또한 우리에게 자본주의제도를 강요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에 군사적으로 서로 싸우지 않을 때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sup>8)</sup>

다섯째 최근까지도 북한은 남한의 휴전협정 당사자성을 항상 인정해왔다는 것이다. 먼저, 북한은 그동안 약 42만건에 달하는 남한의 정전협정위반사례를 지적해왔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남한의 당사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의 반증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연설, 1962년 10월 23일>, 『김일성 저작집』16권,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p.478.

7)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와 한 담화, 1972년 6월 21일>, 『김일성 저작집』, 27권, p.325.

8) <일본 총영사 대표단과 한 담화, 1972년 6월 1일>, 『김일성 저작집』, 27권,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4, p.243.

인 것이다.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남한에 대해서 협정의 준수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말을 바꾸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은 준수의 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더라도 북한은 사실상 남한의 당사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제1장 제4조 –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2장 제11조 –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sup>9)</sup>

이상의 모든 역사적 근거와 실질적 이유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오직 남한과 북한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 모든 사실에 덧붙여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 전쟁(1950-53년)과 갈등(1953-현재)의 “실질적 당사자”라는 점이야말로 남북평화협정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 남한과 북한의 평화협정의 체결 없이는 어떠한 한반도평화보장장치도 불완전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핵심 당사자가 빠진 한반도문제관련 협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구조적 수준에서 보면 1994년의 제네바 북미기본합의는, 남한이 배제된 북미협정이라는 사실 자체에 이미 출발부터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유일한 평화협정 사례는 북베트남 — 당시 미국은 남베트남을 배제하고 북베트남과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 이었으나 그것은 남베트남의 적화를 허용한 대표적으로 실패한 평화협정일 뿐만 아니라, 또한 평화협정의 목표가 미국이 남베트남으로부터 명분있는 철수

9)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러한 합의는 부속합의서에도 통일하게 판정되었다. 북한은 그동안 사실상 남한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인정해왔던 것이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 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무속합의서」의 「제5장 절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제18조, 제19조, 제20조..

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전혀 실질적인 평화를 담보할 수 없는 협정이었던 것이다. 세계의 평화협정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평화협정의 체결로도 공고한 실질적 평화체제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남북평화협정체결은 한반도평화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것은 평화(협정)의 충분조건을 함께 갖추어 가는 전체 과정의 산물이자 부분이어야 하는 것이다. 군비통제가 그 첫 출발점이라는 점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즉 평화체제 수립은 평화협정과 군비통제의 양측을 통해 진행되어야하는 것이다. 오늘날 남북관계메트릭스가 DJ시대의 햅변정책 대 군사제일주의에서 노무현 시대의 자주국방 대 군사제일주의로 넘어간 상황을 볼 때 평화협정과 군비통제를 통한 한반도평화체제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된다.

다음으로 평화협정과 연결된 남한 작전지휘권의 환수 역시 남북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핵심요인이 된다. 작전지휘권의 문제는 기실 한국전쟁에서 북한봉과 시의 통치주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 최대의 쟁점 중의 하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전후에도 해결되지 않았음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및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는 데에 있다. 문제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의 통치권의 문제이다. 이 들은 기실 탈냉전 시기에 서로 연결되어있다. 미국이 전자를 양보하지 않는 이유의 하나도 후자와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먼저, 1950년 7월 유엔군 사령관으로의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이 끼친 영향은 오늘의 한반도 평화건설 문제에서 실로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참전과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의 유엔군 사령관으로의 이양은 전혀 다른 차원을 구성하는 문제로서 전자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후자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미군의 참전 이후 7월 7일 유엔군이 구성된 데 이어 9일에는 백아더(Douglas MacArthur)가 주한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었다. 백아더의

명령에 의해 13일에는 주한 유엔군 사령부가 설치되었다.

그 후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15일 작전지휘권 이양서한을 통해 전시 동안의 한국군에 대한 포괄적인 작전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유엔군 사령관 작전지휘 회하로(under your operational command) 이양하였다. 7월 18일 맥아더가 이를 수락하는 답신을 이승만에게 보냈으므로써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유엔군 최고 사령관에게 공식적으로 이양되게 되었다.<sup>10)</sup> 그러나 이 양도는 한국에게 다시 돌려지지 않은 채 탈냉전 시점의 오늘날까지 한반도 문제-한미관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점으로 남아있다.

유엔군 최고사령관이 행사하면 작전지휘권은 휴전협정이 성립되고 이어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1953년 10월 1일, 발효: 1954년 11월 18일)이 발효되기 하루 전인 1954년 11월 17일에 체결된 「한미합의의사록」(「1954년 7월 27일 - 30일 위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양국대통령 및 보좌간 간의 회담과 그 후에 한미 양국대표자 간에 이루어진 협의에 입각한 한미합의의사록과 이에 대한 수정」)에 의해 유엔사령부(the United Nations Command)회하로 이양되었고, 또 작전지휘권이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축소되었으며, 1950년 7월 15일의 서한 중 '현재의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during the period of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이 '유엔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while that Command has responsibilities for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으로 변경되었다.<sup>11)</sup> 작전지휘권이 군대의 작전, 인사, 행정 및 지원 등 작전 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행사임에 반해 작전통제권은 단지 상부의 전략지시에 따라 순수히 군사작전만을 협조, 조정하는 것이며 인사, 행정 및 지휘 사항은 자국군에 귀속된다.<sup>12)</sup>

1961년 5월 군사쿠데타 시 한국군 부대 일부가 유엔사령부의 승인없이 군대를 이동하고 단독행동을 하자 유엔사의 작전통제권의 범위와 행사조건 및

10) 한국전쟁사, 2권(1968), pp. 456-468. 각각의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Y. H. Chang, ed. *The United Nations and the Korean Question*, pp. 216-219를 참조.

11) 대한민국회고연표 - Ⅱ 주요문헌, 1948-1961(외무부, 1962), pp. 334-341.

12) 유재갑,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세종연구소, 1996), p.109.

내용은 다시 축소, 수정되어 "유엔군 사령관은 한국을 외부의 공산침략으로부터 방위함에 있어서만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다. 그후 유엔사가 실질적인 기능을 상실하자 한미양국은 유엔사를 해체하고 한미연합사령부(CFC Combined Forces Command)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1978년에 창설되었다. 이후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던 것을 한미연합으로 행사하게되어 작전통제면에서 한미연합시대로 돌입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90년부터 80년대의 광주의 비극 및 반미감정의 격화와 더불어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측에 이양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최초 이 문제는 미국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한국측의 우려로 결정은 뒤로 유예되었다. 그러나 결국 1992-93년 양측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1994년 12월에 이양하기로 완전히 합의하였다.<sup>13)</sup>

이렇듯 지속적으로 한국은 자국군의 작전지휘와 통제의 문제에 있어서 점차 독자적 영역을 확대하여왔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획수되지 못한 상태이다. 1992-93년의 합의에 따라 현재 전시 작전통제권은 전쟁발발시에 양국의 합의에 따라 전쟁상태 둘입과 동시에 미리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연합사가 행사하기로 되어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미획수로 인하여 남북간의 갈등이 악화될 때는, 또 북미갈등이 악화될 때는 1950년 가을과 같은 상태 – 북한통합권을 들러싼 한미간의 격렬한 갈등 –로의 발전은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문제는 실제의 전시상태 둘입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으로의 둘입으로 인한 한반도 사태의 불안정에도 미국이 북한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할 때이다. 그럴 때 우리는 독자적으로 작전지휘권-북한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현재 상태로 그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작전지휘권 이양이 이승만-한국군의 자발적 이니셔티브에 의해서였건 미군-

13) 한국전쟁 이후의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의 변화와 그것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오기량, "한번도 평화정책과 국제환경,"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남북분단의 극복과 평화* 서울: 법문사, 1990), pp. 259-264; 유재갑,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pp. 106-113을 참조하라.

맥아더의 거부할 수 없는 요구에 의해서였건 한미간 전쟁지휘의 경험과 군대의 규모, 대북 열세, 지휘체계의 불합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작전지휘의 통일은 일정 정도 불가피한 측면을 안고 있었다.<sup>14)</sup> 그러나 전쟁의 종식 이후가 문제였다. 극단적으로 말하여 오늘날 북한지역에 불발사태가 발생하거나, 남북긴장이 국도로 고조되어 대소(大小)간 무력충돌이 진행될 경우 만약에 미국이 북한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할 경우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의 권한은 한미연합사에게 넘어간다. 그것은 사실상 미군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전시 상태가 선포될 경우 우리의 군대가 북한지역에 진주하는 문제는 다시 엄청난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군의 허락이 없이는 마치 1950년 가을의 경우처럼 북한지역에 진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논란 끝에 가까스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

당시에는 북한의 선제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반격을 명분으로, 즉 완강한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북한 스스로 국경으로서의 38선의 존재를 먼저 해소 시킴으로써 비교적 어렵지 않게 월경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통일을 위해 군대가 진주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당시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sup>15)</sup> 우리의 군대와 경찰이 진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군이 단독으로 진주한다면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의 주체는 미군이 되고 그것은 자연스레 미군의 통치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단기적

14) 당시 3군총사령관을 맡고 있던 정일권은 따르면 작전지휘권의 이양은, 장비와 무기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초전부터 죽어나가는 국군병사가 허파함에도 불구하고 폭자적인 대수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례의 분리로 인해 미군의直율적 지원과의 받을 수가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의해 불가피하게 위임된 조치였다. 이승만은 그의 간직을 끌고는 망설임없이 그 자리에서 수용, 작전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겨주었다. 즉 작전지휘권의 이양은 군사적 차원의 고려에서 군사하게 내려온 조치였다는 것이다. 정일권 면담, 1990년 2월 15일, 서울, 경일권의 이 중연은 자료에 의해 좀더 면밀하게 접두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5) 이 문제와 관련하여 1997년 한 학술토론회에서의 이부영 외원의 발언은 시사적이다. 그에 따르면 하바드 대학의 페어뱅크센터가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 포럼(Asia Pacific Forum)」에 참여해서 자신이 미국의 권리 및 학자들과 얘기하는 가운데서 북한이 급속하게 통폐합 때, 북한에서 내전이나 삼육전이 벌어질 때, 한국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 한국군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그들은 그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았다. 그것은 더 큰 삶속, 더 큰 남북간의 전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물음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대답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들은 중국과의 사이에는 그러한 사태 발전의 가능성과 대비에 대해 사전논의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고려대학교 이세아문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보고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남북한의 입장 및 주변 4국의 입장」(고려대학교 이세아문제연구소, 1997년 7월 25일), pp. 104-105.

으로는 우리가 북한지역의 주권을 회복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워진다. 상당한 기간 동안의 대미교섭을 통하지 않고는 안될 것이다. 이때면 1) 남한 + 미군점령하의 북한지역, 2) 남한 + 미국 + 중국 공동점령 하의 북한지역, 또는 3) 남한 세계 상태에서의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공동관리라는 "새로운 분단 상태"가 장기화할지도 모른다. 1950년 당시 대북 진주 직후 국제적으로 논의 된 내용 중에는 북한중립지대안도 있었고 우리의 정부와 국회 역시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나올 수 있는 통일방안은 이미 당시에 거의 다 나왔던 것이다.

북한 지역에 대한 통치주권의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남한은 현행 헌법에서도 영토에 관한 조항인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여 북한지역을 명백히 그들의 통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6)</sup> 그러나 이 조항은 한미간에는 물론 이려니와 국제연합을 비롯한 어떠한 국제기구로부터도 받아들여진 바 없다. 단지 우리 정부만이 북한의 영토를 대한민국의 통치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같은 헌법은 4조에 과거 헌법에는 없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sup>17)</sup>는 통일체제의 성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는 바, 3조와 이 조항을 결합하면 자유민주주의로 전(全)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의사 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그러나 우리의 헌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가성과 주권이 염존하는 오늘의 조건에서 남한이 전체 한반도에 걸친 합법성을 인정받거나 주장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을 미국은,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여,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sup>19)</sup> 미국의 북한 국가

16) 김철수, *한국헌법사*(서울: 대학출판사, 1988), p. 636. [부록III-제6공화국 헌법]

17) 김철수, *한국헌법사*, p. 636.

18) 헌법, 영토규정, 통일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계성호, 「한법상 통일관련 조항의 개별문제」, 『통일연구논총』, 2002년 6월), 민족통일연구원, pp. 263-306를 참조.

19) 미국 외교조나국, 「북한의 국제적 승인에 관련된 법적 분석」(1996년 12월 6일), 『전략연구』, 제IV권, 2호(1997년

성 인정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담고 있다. 내적 폭력의 합법적 독점, 즉 북한정부가 자기 통치지역의 영토와 인구에 대한 독점적 통치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국가성이 흔들릴 때 남한은 전체 한반도에 걸친 '합법정부' 주장과 '통치능력 독점'을 주장하겠지만 국제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은 이미 북한에서의 사태급변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에 근거한 남한의 배타적 통치주권 주장의 가능성을 고려, "북한에서의 정변 발생 시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에게 무력을 지원하는 행위도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제법을 어기지 않고 북한지역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는 유엔을 통한 인도주의적 개입 밖에는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20)</sup> 그것은 1950년 가을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1950년과 같이 다시 유엔을 언급하고 있는 점도 동일하다.

국력의 역전과 냉전체제, 그에 따른 통일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몇몇 핵심문제에서 상황은 1950년 가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내부적으로 폭력의 합법적 독점을 상실하지 않는 한 북한의 국가성과 주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국제적 국내적으로 점진적 방법을 통해 평화통일을 지향해할 필요성은, 지금까지 성장해온 남한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역진시키지 않고 남북한 국민들의 생명과 안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북한이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실제의 붕괴상황으로 돌입한다면 아마도 1950년 가을의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조건으로 볼 때 만약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곧바로 통일로 연결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 보다 훨씬 적다. 그리고 실제로도 1950년 10월의 결정 이후 아직 국력의 특정한 결의나 한미조약의 어느 수준에 의해서도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의 합법적 통치주권이 인정된 바가 없다.

6월), pp. 191-192.

20) 미국 의회조사국, 「북한의 국제적 승인에 관련된 법적 문서」(1996년 12월 6일), p. 193.

전쟁의 종식 이후 남한 정부가 오늘날까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유념하고 치밀하게 외교적 준비를 해왔다는 증거는 없다. 1950년 시점보다 문제는 더욱 복잡해져 있다. 왜냐하면 현재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해 있는 동등한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1948년의 국련 선거와 50년 10월의 국련 결정들을 무효화하는 어떤 조치도 아직 없는 시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충돌적인 상호 모순되는 이중성을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작전통제권의 미국장악이 오히려, 1950년대와 60년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남북한군의 충돌의지와 대북 대남 호전의지를 통제하는 평화유지적 기능을 행사하는 측면과, 반대로 그것이 민족적 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화와 통일에 부정적 기능을 행사할 양면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다. 특히 1950년 전쟁 직전 소련군과 미군이 차례로 한반도를 떠났을 때 통일의지에 불тер는 남한과 북한군의 고위장교들의 넘치는 의욕으로 인해 38선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충돌이 격화되었음을 고려 할 때<sup>21)</sup> 평화지향적이지 않을 때의 자주성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미군은 일정 기간 동안 남한군과 북한군의 무력사용을 동시에 억제하는 이 중억제(double deterrence)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것이 사실이다.<sup>22)</sup> 우리는 이 미묘한 문제를 이중집근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관계에서의 대결해소 노력과, 대미관계에서의 자주성의 확보를 통해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합리적 혜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말을 바꾸면 민족 내부적으로 평화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상태에서, 전시의 작전통제권까지를 흰수하는 자주성의 추구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대내 평화와 대미 자주·민족주의가 결합되는 점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남북평화협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살펴보자.

21)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출처,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권, pp. 619-629를 참조

22) 이 미묘한 문제에 대한 지적은 오기령,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환경,” pp. 262-263; 앞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학술회의 에서의 출자의 트론, p. 98; 이홍영, “한국제정세와 가능한 통일방안의 도색,” 제3차남북태의학자통일학술회의 발표 논문4부경, 1997년 8월 29일-30일, p. 11을 참조

최근 남한과 북한의 상호 매트릭스는 오늘날 핵별정책 대 군사주의(1998-2002)를 거쳐 자주국방 대 군사주의(2003-)라는 엇물린 동시에 전환적인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후자의 매트릭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군사력, 자주국방이 있어야 대북발언권도, 대미자주권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는 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북한과의 상호 군축과 평화정책이 아니라 더 많은 미국 무기를 사는 것이 미국에 대해 더 많은 자율성을 갖게 할 것이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남한이 확보할 수 있는 군사력은, 최대 북한압박용 정도일 것이다. 그것으로 대미자주권이 확보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우리는 두 가지로서 대북 발언권과 대미 자주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남북평화협정이고 다른 하나는 작전지휘권 환수이다. 전시 작전지휘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반드시 환수되어야 한다.

첫째는 주권국가로서의 의무와 역할,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이다. 사실상 냉전시대 미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권국가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온전한 의미의 주권국가는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제도적으로는 온전한 주권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주권이 국가의 대내적 폭력 독점성 및 대외적 상호승인 자율성을 의미한다면 — 주권의 이중성 — 한국 역시 주권국가임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별히 독일, 일본, 남한, 대만 등은 제도적으로도 온전한 주권국가라고 하기 어려웠는데, 따라서 이들은 반주권국가(semi-sovereign state)로 불릴 수 있었는데, 독일과 일본이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하였다면 남한과 대만은 특수한 분단상황으로 인해 그러하였다 고 할 수 있다.<sup>23)</sup> 국제정치의 현실주의를 고려하더라도 대만과 남한 역시 또 다르다. 대만은 거대중국과 대면하고 있고, 유엔회원국이 아니나 남한은 이미 국력의 대부 역할을 시현하였고 임연한 유엔회원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 반주권성(semisovereignty), 반주권국가(semisovereign state)의 개념은 샤츠슈나이더(Etienne Schatzschaider)의 미국 국내정치개념(semisovereign people)을 사례로 국내국제정치에 적용하여 발전시킨 카렌스타인으로부터 벌여왔다. Peter J. Katzenstein, *Policy and Politics in West Germany - The Growth of a Semisovereign Stat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7), pp.8-10.

탈냉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자국 군대에 대한 전시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산물일 뿐이었다.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난 올해는 전시작전지휘권을 회복하는 원년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은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군사주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주권의 회복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선택이어야지 전쟁과 공격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림3>은 탈냉전 시기 중 노무현부시 조합이 가장 위험한, 또는 강경한 대북공조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한국문제, 특히 남북관계에서의 자주성, 발언권, 협상력을 갖기 위해 서라는 점이다. 그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남북평화협정을 통해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는 점이다. 북한은 남한의 대미 종속성에 대해, 특히 군사부문에서의 종속성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우리가 우리의 안보 일반에 대해 포괄적인 한미협력을, 한미공조를 추구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사실 냉전시대 내내 미국의 안보우산을 통해 후진국가에서 빠르게 중진국가로 상승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특히 중국, 일본과 대면하는 동아시아의 독특한 지정학에 비추어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군사통합권을 외국에 이양해 놓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북평화협정의 체결은 전시작전지휘권의 흔수 없이는 불가능하며,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군사주권, 군대통합권이 없는 상대와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이 실현가능하며, 또 설사된다고 하더라도 평화를 담보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때의 평화란 무엇인가? 우리는 하루 빨리 작전지휘권을 흔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올해 평양회의를 포함해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의 관료 및 학자들과 공개, 비공개 회의에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없이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특별히 올해 평양

에서는 남북평화협정의 근거와 이유에 대해 상세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시급한 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논리적으로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강한 반박을 가하거나 부정하지는 못하였다. 그런 때 그들이 항상 보인 반응의 하나 — 다른 하나는 “남한이 과연 미국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었다. — 는, 특정 사람을 불문하고, 남한의 전시 작전지휘권의 부재에 대한 약간은 경멸적이고 약간은 안쓰럽다는 반응이었다. 평등과 호혜에 바탕하더라도 북한과의 거의 모든 대화에서 비전과 원칙의 논리적 사실적 우위를 보여왔지만 이 문제에서는 어떤 높은 벽, 논리적 궁색함을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오랫동안 작전지휘권 환수를 주장한 것은 이러한 경험도 크게 작용했다. 필자가 “그래도 평시 작전지휘권은 확보하고 있지 않나”고 물었을 때 “작전지휘권은 전시에 더욱 중요한 것”이라는 간단한 답변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셋째는 대미, 대중 자율성을 위해서라는 점이다. 전시 작전지휘권을 이양하지 않으면서 반복되는 미국의 언명, 즉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한 당사자 성”, “남북주도하의 한국문제 해결” 논리는 진심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탈냉전 이후 지난 시기 한미갈등의 핵심이 결코 대북문제만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의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 지니는 함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는 기본적으로 구조적 친미구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보다 정책적 수준에서 자주 더 반미적이었음을 정녕 사려깊고 예리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의 반미발언과 성향이 누구의 무엇을 위하 것이었는지 모르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좀 복잡한 언명이 지나는 뜻을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미주의라는 용어를 벌써부터 사용하고 있는 이 모범적인, 쉽게 깨닫기 어려운 친미주의적 발언은 나중에 한국 외무장관이 되는 변영태의 1947년 언명이다.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는 ‘친반공미국적’(親反共美國的)이 되려면 ‘반친공미국적’(反親共美國的)이 되어야한다..... 우리가 친공반공을 동시에 할 수 있다면, 즉 우리가 락(譖) 및 부(咎)를 동시에 말할 재조가 있어야만 비로소 전친미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친공미국적이 되며 타산적 동기에 자극되어 때때로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아 한국의 독립을 억제하며 방해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먼저 ‘반한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한국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반....적’인 태도를 취하게 한 것은 의심할 바가 없는 사실이다....”(강조는 원문그대로)<sup>24)</sup>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이렇게 자신들의 구조적 반미인식과 정서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친미-종미(從美)가 앞 정부들 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들은 아마도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불가피한 요인으로 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 시기 미국의 대한 영향력은 오늘보다 훨씬 더 커졌다. 한미간에 대북문제의 혼돈차이가 적었던 김영삼 정부 시기에도 한미관계는 좋다고 만은 할 수 없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의 한미갈등은, 대북 문제라는 외피로 나타났지만, 동시에 MD체제 참여를 포함한 미국의 군사전략과 한국정부의 안보전략의 충돌의 측면도 강했다. 오늘날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 MD참여, 무기대량구매 결정 이후 한미 갈등이 대폭 축소되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대로 한미간에 합의되었다고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인식하고 발표하였던 내용들은 미국의 원래 계획과 일정대로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가 말하는 자주 국방은 미국무기의 더 많은 구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식의 자율성과 작전지휘권 환수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재의 노무현 방식으로는 자주 국방은 더욱 요원해지며 평화건설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한 역사적으로 북한 역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

24) 민영희, 「반미주의」, 『나의 조국』(서울: 자유출판사, 1956) p. 96

었다. 1950년 10월 19일 한국전쟁 참전 후 모택동은 팽덕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12월 4일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의 연합사령부를 만들었다.<sup>25)</sup> 이로써 모택동은 북경에 앉아 있었으되 직접 모든 주요 작전을 지도할 수 있었다. 조중연합사령부의 창설은 김일성의 비밀방문에 따른 합의의 결과였다. 12월 3일 김일성은 전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극비리에 직접 북경으로 모택동을 방문하였다.<sup>26)</sup> 그는 심양에서 고강의 안내를 받아 북경으로 왔다. 김일성으로서는 모택동과 중국공산당 중앙에게 참전에 따른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였다.

김일성과 대담에서 주은래는 조중 양군의 통일적 지휘체계에 대해 팽덕회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전문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고강 역시 팽덕회의 의견을 전하며 두 나라의 군대의 작전지휘가 나뉘어진 까닭에 오해가 생기고 심지어 자중지란에 빠지는 폐단까지 있다고 했다. 그는 지원군과 인민군이 맞붙은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사태가 마치 미군과 국군의 초기의 개별적인 군사작전을 보는 것과 같다. 모택동 역시 두 나라 군대를 일괄 지휘 관리하는 통일된 사령부를 시급히 구성해야겠다고 결론지었다. 김일성은 스탈린 동지도 두 나라 군대의 작전지휘권을 통일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등지들이 정직(正職)을 맡고 조선등지들은 부직(副職)을 맡는 연합사령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의견은 이미 로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거의 일방적으로 중국 주도로 연합사령부가 만들어지고 작전지휘권이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7)</sup>

조중연합사령부를 만들으로써 북한의 전병력까지 모택동과 중국지휘부의 지휘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인민군에게도 연합사 명의로 명령이 하달되었다. 사령관과 정치위원은 팽덕회가 맡았고 북한은 다만 부사령관[김옹]과 부정치위

25) 『板門店 談判』, p. 116; 『抗美援朝回憶』, pp. 76, 101-102; 『아 합록강』 2권, pp. 9-22.

26) 김일성은 1951년 6월 휴전협상의 시작을 전후하여 극비리에 모택동을 다시 한 번 방문하고, 이어서 스탈린도 방문하였다. 『6·25 내막: 모스크바 세 종언』, 『서울신문』, 1995년 7월 4일.

27) 와다 하루끼는 조중연합사령부가 소련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한국전쟁』, p. 202.

원[박일우]을 맡았을 뿐이었다. 또 한 명의 부사령관은 중국의 등화가 맡았다. 결국 중조연합군의 최고지휘자는 북경의 모택동이었고, 그의 지휘를 받아 전쟁을 실제로 지휘한 것은 펑더회였다. 북한측이 중국의 명령을 전한 것은 박일우였고, 김일성은 최고사령관이란 이름을 가질 뿐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소외되어있었다.<sup>28)</sup> 조중연합사의 창설은 대외적으로는 비밀이었다.

### 민족공조와 민족평화 - 군사주의를 넘어 평화문화로, 인간안보로

오늘의 전쟁위기를 보며 우리는 진정한 평화, 지속적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정치군사우선주의가 갖는 시급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게된다. 남한과 북한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민족공조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탈냉전 이후 남과 북은 경제와 평화 두 영역 모두에서 상호 의존적이다. 탈냉전 이후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선택이 타방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호의존상태에 들어서 있다. 냉전시대와 비교해 예상치 못한 연쇄반응으로 인한 남북 정(正)의 의존의 증대인 것이다. 북한문제는 이제 시간에선 “즉각적이고”, 정도에선 “심도 깊게” 남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변전된 것이다. 반면 남한의 결정 역시 유사한 시차와 효과를 갖고 북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기를 위한 특정 선택이, 상대를 돌아 자기를 규정하는 후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민족공조를 통해 전쟁을 막아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1998년-2002년의 교류협력의 급증은 평화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5년 간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대화와 교류협력이 추진되었다. 남북간 왕래인원은 1998년 이후 급강산 관광을 제외하고도 이전보다 13배 증가하였다. 특히 교류 분야는 문화·예술·학술·체육·종교·방송 등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었다. 특히 총 76회의 회담중 단 4회를 제외하고 정상회담 이후에 개최된 것일 만큼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의 영향은 컸다. 판문점

28) 하다 하루히, 「한국전쟁」, p.296.

또한 1994년 이후 6년만에 남북 회담장소로 복원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회담을 통해 남북간에는 공동보도문 18건, 합의서 22건이 채택되었다.

2000년 9월에는 문단사상 최초로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과 관련하여 비무장지대 일부의 철책과 지뢰를 제거했고, 남북군사실무자간 직통전화도 설치하였다. 남북경협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투자보장, 이증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 등 4개 경협합의서가 타결되었고, 남북교역은 1998년에 2억달러에서 2000년과 2001년에는 4억달러, 2002년에는 6억4천만달러로 증가하였다.

교류협력의 규모는 표면적 요란함과는 달리 결코 크지 않았던 것이다. 최대의 포용정책을 편 DJ 정부에서의 교류 규모가 이 정도였다는 점은 중국과 대만의 교역규모가 2002년 현재 446억 4천만달러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경제통합의 평화와 통일에서의 역할, 기능주의 관점의 남북문제에의 적용을 검토하기 이전에 규모 자체가 너무 적었다는 점에 놀라게 된다. 독일의 경우 분단시기 서독의 대(對) 동독 지원과 투자가 67조원이었음을 상기하면 두 한국관계는 두 독일 및 두 중국의 관계에 비추어 이 분야에서 조차 너무도 뒤지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독일과 중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두 한국의 경우는 우리에게 아예 기능주의에 대한 적용 가능성 자체를 바랄한다. 준 것, 교류한 것이 거의 없는데 그것의 정치군사적 확산효과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민적 동의와 두명성 문제가 해소될 경우, 특별히 북한의 기아문제를 유념할 때 대부지원과 투자는 DJ시기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증가되어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핵과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결은 그 출발점이고 귀결점이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 큰 문제는 민간교류, 경제협력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공고한 평화는 오지 않고, 오히려 전쟁위기가 높아졌다라는 데에 있다. 해상충돌/미사일 실험/핵위기와 군사회담/철도연결/교류협력의 갈등적 병존이 지속되는 현상

은, 남북이 평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함께 추진하였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과거 남의 기능주의를 강도높게 비판하였던 북의 논리처럼 이제 우리는 군사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공조를 실현해야 할 때이다. 정치군사영역에서 평화를 위한 민족공조의 한 침정으로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현 위기를 넘고, 항구적인 한반도평화체계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돌파구일 수 있다. 남북평화협정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평화체계에 함께 참여하고 공조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평화는 군사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과 미국은 자신의 군사주의는 중단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군사주의가 한반도평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상대의 군사주의는 반평화적, 전쟁지향적이고 자신의 군사주의는 평화수호용이라는 지독한 역설인 것이다. 핵개발을 포함, MD를 비롯한 미국의 군사주의에 잘 부응하고 있는 북한은 먼저 핵화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의 선제적 핵포기는 미국의 MD정책과 대북전쟁의도를 결정적으로 약화, 무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군사적 핵제거 위협 이전에 북한의 핵화 프로젝트가 먼저 시작되었음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핵프로젝트는 민족을 전쟁의 참화에 몰아넣을지도 모를 도박이 아닐 수 없다. 그 점에서 1980년대까지 지속된 한국 시민사회와 반핵운동이 북핵위기 앞에서 중단된 것은, 민족주의 이외에는 설명불가능한 탈냉전기의 한 숨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전술했듯 민주화와 평화의 상관관계를 말할 때 한반도에서 그것은 곧 북한의 민주화를 말한다. 민주주의없는 북한에서 평화의 문화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1999년 유네스코의 천명이래 이른바 평화의 문화(culture of peace)는 오늘날 평화운동, 전략, 이론, 철학, 체제의 핵심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평양에 전쟁의 문화(culture of war)와 군사의 문화(culture of military)는 넘쳐흐르지만 평화의 문화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는 평화에 의해 담보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전혀 함께 가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체제안보(regime security)를 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반세

기에 걸친 그들의 고립과 봉쇄를 고려할 때, 전쟁을 통하지 않으면서 밖으로부터 이를 풀어주는 것 역시 평양에 평화의 문화를 소생케 하는 적절한 경로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말하는, 전쟁을 통해 전쟁위기를 해소한다는 역설은 결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쟁옵션의 선택은 전쟁이지 전쟁위기 해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은 두 군사주의, 두 예외주의(exceptionalism)의 충돌을 중단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국가안보가 인간안보와 직결되어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강조컨대 국가안보의 목적은 인간안보인 것이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에서 집단적 아사, 탈출, 강제수용을 포함하여 인간안보가 철저히 파괴되고 있음을, 인권에 대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특수주의(particularism)의 충돌과 긴장문제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제국의 국가이익추구가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주의의 탈을 쓰고 추구되는 것을 수용해서도 안되겠지만, 반대로 특수주의의 우산에 숨음으로써 인권과 민주주의, 인간안보에 대한 보편기준을 거부하려해서도 안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김정일체제의 특수주의 담론에 대해 침묵하는 동안 우리가 과거에 박정희체제의 특수주의 담론, 즉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간안보를 제한하는 논리에 저항했었던 우리자신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해답은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이상적 결합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인간안보의 최소요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계울리 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전면적인 교류협력을 먼저 주장하고 제기한 측은, 남이 아니라 북이었다. 북측은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면적 교류협력을 제안한 바 있었다. 이것은 남과 북의 분단장벽을 인적 부분에서부터 풀어보고자 하는 인도주의의 발로였다. 그 이후 남측 역시 전면적인 교류협력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남북의 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인적 교류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다. 이제 북한은 여러 차례 제안하였듯 전면적인 개방을 통해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

남한의 최대의 과제는 오늘의 민족의 해·전쟁위기(평화)와 경제·인도주의

문제(생명·인권)를 어떤 지혜를 통해 함께 결합하여 넘느냐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남의 시민사회가 보여준 인도주의적 민족협력의 이상과 가치는 크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남한 민주화의 역사는 민족문제에서 시민사회의 선택이 좀더 평화지향적이고 민족공조지향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내부의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사회의 역량은 남북관계에서는 민족의 협력과 평화를 향한 지원의 손길로 나타났던 것이다. 1987년, 1993년, 1998년 이후 남측 시민사회의 커다란 변화는 북에 대한 경제협력의 증가였다. 남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하였다. 남측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1998-2002년 5년간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지원은 3,425억원으로 연평균 685억원 규모였다. 같은 기간 정부와 민간의 총 대북지원액은 5,829억원으로써 연평균 약 1,160억 원이었다. 태산명동의 정책적 언표에 비해 결코 크지 않은 액수였으나 이것은 민족협력과 화해를 위한 기여로 기록될 것이다.

평화에는 기본적으로 생명과 번영의 뜻이 내포되어있다. 평화의 어원인 살림은 곧 번영과 성장을 뜻한다. 평화(平和)의 어의는 고르게 밭을 일에 넣어준다는, 잘 먹여 살린다는 뜻이다. 우리는 평화를 마치 무위, 소극, 부동(不動), 소여(所與)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생명, 번영, 발전, 그리고 적극적 공존공영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빈곤과 무위(無爲)와 소극과 고립은 결코 평화의 내포와 외연이 될 수 없다. 평화는 살림(살려냄)이고 공존이고 번영이며 적극적인 어우러짐과 하나됨을 의미한다. 남과 북은 국가안보의 최종 목적은 인간안보, 곧 생명이라는 점을 깊이 통찰해야한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통해 확보될 평화의 목적은 바로 인민의 생존, 생명, 행복과 같은 인간안보의 보편적 이상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북한의 절망적인 식량사정 때문에라도 그 해결을 위한 전제로서 오늘의 북핵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하며, 북의 대량살상무기 포기와 공고한 평화체계 구축을 통해 대폭적인 대북 식량 지원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 문제가 남한에서는 재고식량이 남아들고, 또한 호텔과 식당

의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 반면, 다만 휴전선을 하나 사이에 두었을 뿐인 다른 한편에서는 집단기아와 아사가 속출하는 21세기 한반도의 극적인 반문명성, 반도덕성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현실은 도덕을 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늘 집단아사 위기를 겪고 있는 아동들이, 특히 여자 어린이들이 가임(可姦) 연령이 되었을 때에 나타날 가공할 우생학적 생물학적 비정상성과 파괴까지 생각한다면 오늘의 위기는 기실 수 세대를 두고 나타날 대참사의 시작에 불과한지 모른다.

우리가 경제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념적 이유로 오늘의 북한기아를 풀지 못해 다음 세대에게 생물학적 집단변형을 유증, 강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단범죄일지 모른다. 평양의 학생소년궁전에서 만난 공연단 어린이들의 깜짝 놀랄 연기력과 묘기가 내게는 결코 박수의 대상으로만 다가오지 않았던 것은, 눈물을 참을 수 없는 슬픔·안타까움과 함께 여러 정치적 경제적 세대적 문제가 중첩되어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아마르티야 센(Amartya Sen)이 말하듯 기이는 결코 자연재해의 산물이 아니며 철저하게 인제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기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부 분배의 문제와 직결된, 또는 체제속성과 직결된 독재국가의 고유한 현상인 것이다.

#### “2003년 체제”(또는 “2004년 체제”)의 건설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원년을

한 사회가 파국적 위기를 넘는 지혜는 결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산물일 수 없다. 그것은 사회적 지혜나 민족적 지혜의 총량에 의해 결정된다. 오늘 우리의 위기의 재연은 결국 우리가 평화를 위한 집합적 지혜의 창출에 실패한 우리 자신의 비이성의 산물이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평화는 엘리트와 국가만의 노력의 산물도 아니다. 한 가지 우리가 뚜렷하게 인식해야 할 점은 평화문제를 둘러싼 국가와 시민사회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평화는

평화를 위한 우리의 주체적이고 의식적인 움직임, 즉 평화운동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가가 평화창조의 주체일 수는 없다. 특정 영토내의 폭력의 독점을 기본요소로 하는 국가는 안보, 즉 평화유지(peace-keeping)의 주체일 수는 있지만 평화창조(peace-making)의 주체는 아니다. 국가가 평화유지의 주체라면, 시민사회는 평화건설(peace-building)의 주체가 된다. 평화건설이 평화운동이 없이 가능하다는 희망은 성립 불가능하다. 그것은 시민, 시민사회의 영역이며 따라서 평화건설=평화창조는 시민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정부와 시민사회는 우리 자신의 확고한 입장과 안을 갖고 이 문제의 해결에 전력 질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문제인식은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은 결정적 순간의 결정적 역할이 필요한 엄숙하기까지 한 역사적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정책우선순위(priority setting)에서 지금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사안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은 당분간 대폭 줄여도 된다. 의지, 시간, 노력, 열정, 지혜를 이 문제를 끓는 데에 최고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이라크전쟁의 종식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절묘한 시점이다. 남과 북은 지금 세계와 한민족을 안심시킬 평화의 안을 함께 도출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한반도가 핵화되었을 때 그것을 핵화를 추구한 북한의 리더십만이 비판받아야할 문제라고 생각하였다면 큰 오산이다. 주체적 의식을 갖고 우리문제로 바빠 달라붙어도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은 사활적 문제를, 제3자적인 중재의식을 갖고는 조금도 풀 수 없다. 대통령은 더 이상 중재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며, 우리는 결코 중재자가 될 수도 없다. 이론적으로 볼 때 국제문제에서 갈등의 중재 역할은 제3자(third party)에 의해 수행된다.<sup>29)</sup> 갈등 당사자들보다 월등한 힘을 갖고 있을 경우 빈다 용이하게 중재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의 일차 당사자이며, 또한 미국과 북한에 비해 월등한 국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반복 사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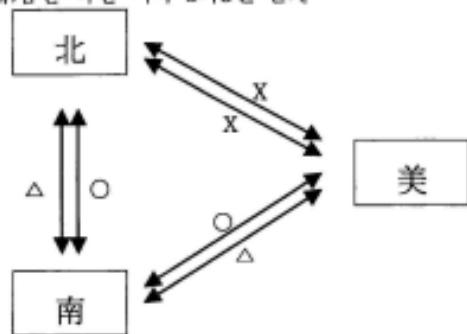
29) *Dictionary of the History of Ideas-Studies of Selected Pivotal Ideas*, Vol. II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8), pp. 449-452

중재역할에 대한 의지표명은 중대한 인식오류의 표현일 뿐인 것이다. 인식오류는 정책대안의 오류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말을 바꾸면, 대통령의 중재자-제3자로서의 인식은 결과적으로 초기의 강한 “반전-반미” 접근방식과 방미 이후의 강한 “반韓-반북” 접근 사이의 급격한 전환, 전이, 반복왕래를 초래하는 근본원인이었던 것이다. 중재자 역할의 자임에서 급격한 미국과의 연대정책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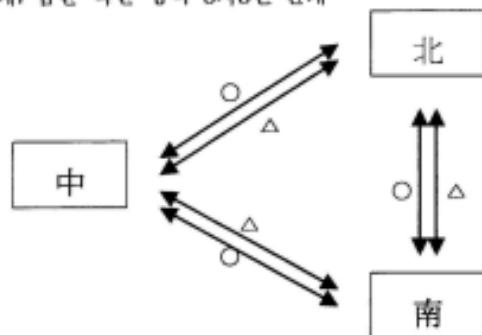
한반도 핵화를 방지한다면 앞서 말한 모든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고 방치한 역사적 책임을 남한의 리더십도 결코 면할 수 없다. 한반도의 영구분단, 상시 핵전쟁위기, 경제침체, 한반도 문제에서의 남한의 역할상실...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시킨 지도자로 기록되느냐 아니면 민족이 핵화-핵전쟁위협으로 가는 길을 방치한 지도자로 남느냐의 운명적인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점, 곧 주체로서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절실했던 시점이다. 우리는 위기의 정점에서 우리의 비전, 지혜, 대전략을 뚜어 역으로 2003년 전쟁의 위기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위기, 종전 50주년의 올해를 역으로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만들 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림1; 탈냉전기 南 - 北 - 美 - 中 4자 관계의 동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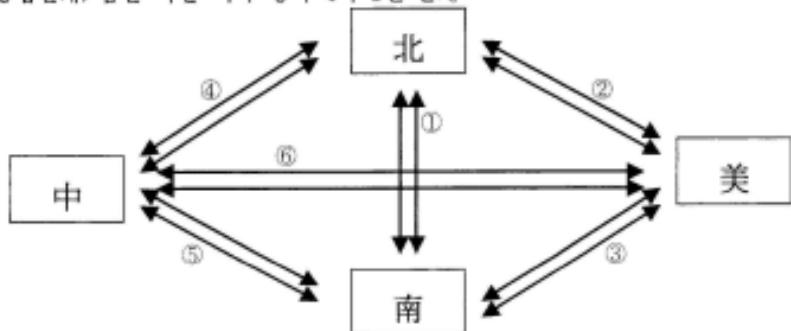
제 I 관계: 남한-북한-미국 3차3변 관계



제 II 관계: 남한-북한-중국 3차3변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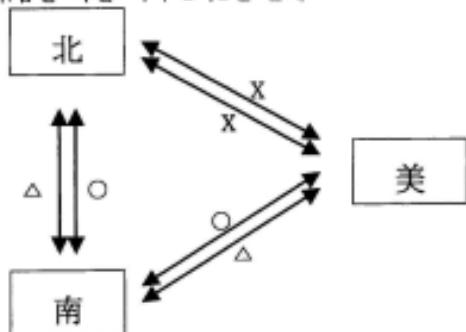


종합관계: 남한-북한-미국-중국 4자 6변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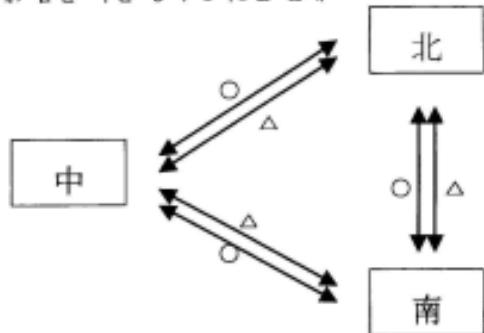


<그림1-2; 탈냉전기 南 - 北 - 美 - 中 4자 관계의 동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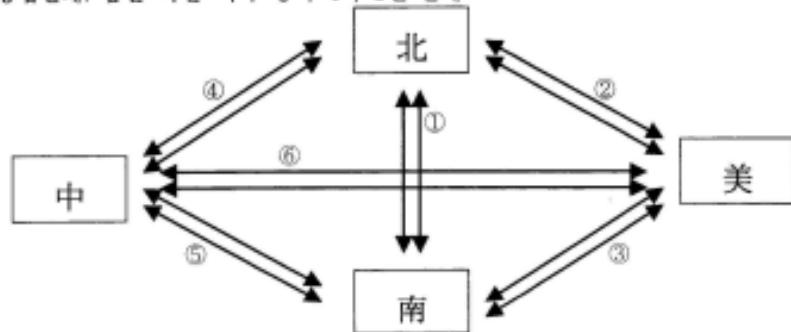
제 I 관계; 남한-북한-미국 3자3번 관계



제 II 관계; 남한-북한-중국 3자3번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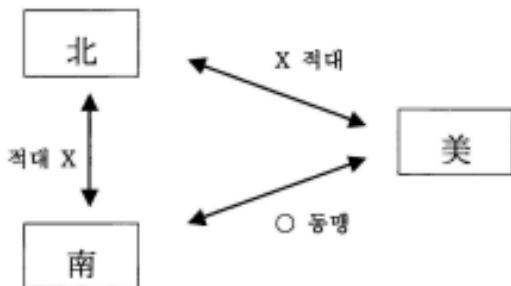
종합관계; 남한-북한-미국-중국 4자 6번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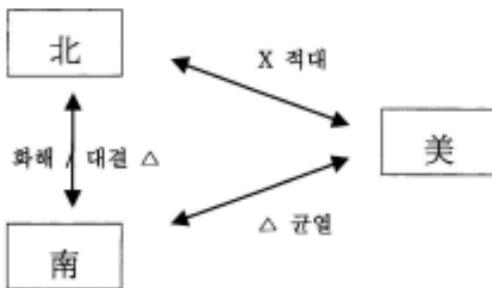
- 1 번 :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포기/군축 대 대규모 경제지원(노무현플랜)/남북평화협정을 교환
- 2 번 : 핵포기 대 국교정상화(정치적 외교관계 수립, 군사적 체제보장, 경제적 봉쇄해제)
- 3 번 : 북핵포기 제공/ 경제부담 면제 대 작전지휘권 이양
- 4 번 : 체제보장확약/경제지원 대 핵포기/대미 설득 및 체제보장 확약 요구
- 5 번 : 경제교류 지속 및 군사안보 협력증진
- 6 번: 미중 공히 북한체제 보장, 남북평화협정지지, 한반도평화체제 보장, 북핵포기 대 MD 포기의 교환

<그림2: 南 – 北 – 美 3자 3번 관계의 동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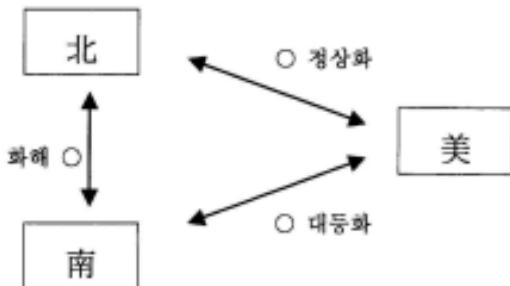
I 단계: 과거(냉전 시대)



II 단계: 현재(탈냉전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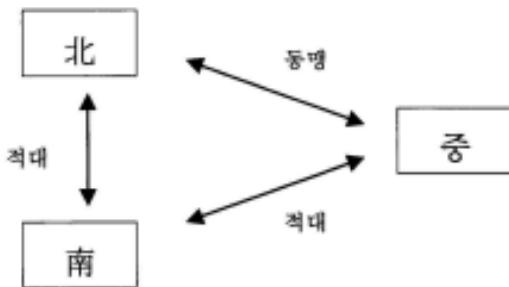


III 단계: 미래(평화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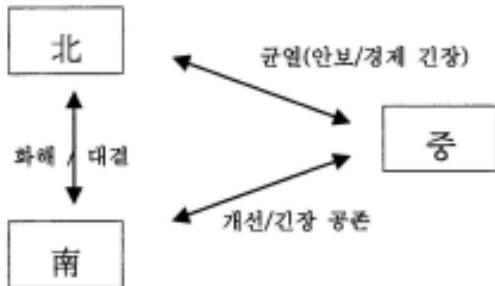


<그림2-2; 南 - 北 - 中 3자 3변 관계의 동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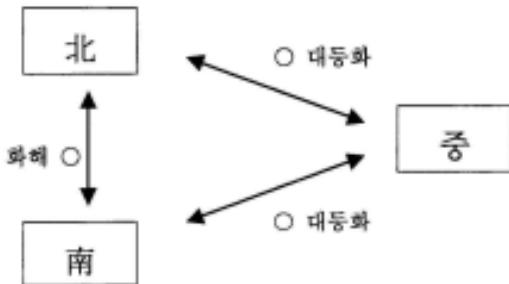
I 단계: 과거(냉전 시대)



II 단계: 현재(탄냉전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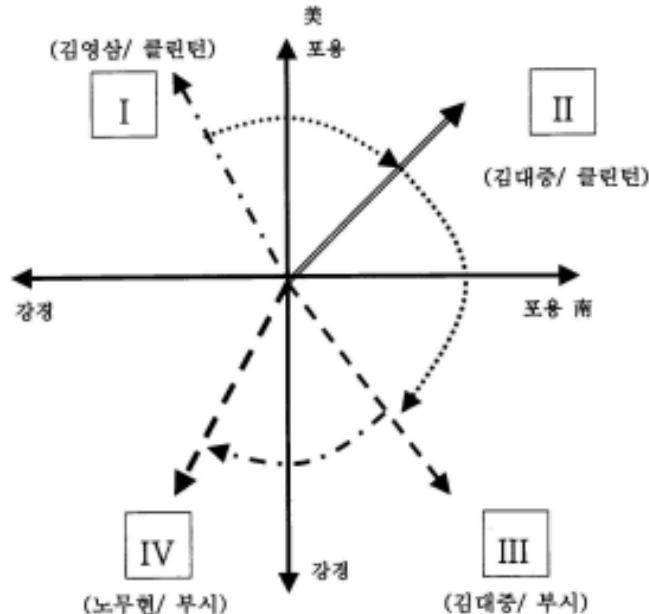


III 단계: 미래(평화체제)



<그림3: 탈냉전기 남한-미국의 대북정책조합의 변화>

南 美	포용 (Dovish/Engagement)	강경 (Hawkish/Containment)
포용 (Dovish/Engagement)	김대중 클린턴	김영삼 클린턴
강경 (Hawkish/Containment)	김대중 부시	노무현/부시 냉전시대





**회원가입안내****평화여성회의 회원이 되시면 -----**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웹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형편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평화여성회 웹사이트 <http://www.peacewomen.or.kr>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회원들끼리 생각과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서 ●**

기본사항	이름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이동전화
연락처(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직장)	주소   직장명   전화번호	우편물받을곳   차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회비구분	일반회원 월5천원 <input type="checkbox"/> 월1만원 <input type="checkbox"/> 월2만원 <input type="checkbox"/> 월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학생회원(초중고생) 월3천원 <input type="checkbox"/> 연2만원 <input type="checkbox"/> 연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회비납부 방식	CMS자동이체	
CMS신청서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가입동기		
관심분야	정세대응 <input type="checkbox"/> 통일과제 <input type="checkbox"/> 국방과제 <input type="checkbox"/> 평화교육문화 <input type="checkbox"/> 갈등해결 <input type="checkbox"/> 평화심성 <input type="checkbox"/> 소식지발행 <input type="checkbox"/> 스타디모임 <input type="checkbox"/> 평화축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가입일	200 년 월 일	

100-391 서울시 중구 잠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4층  
전화 02-2275-4860 전송 02-2275-4861

이메일 [wmp@peacewomen.or.kr](mailto:wmp@peacewomen.or.kr) / [www.peacewomen.or.kr](http://www.peacewomen.or.kr)  
후원계좌 29508-1128009 (서울은행) 예금주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